

서울교육대학교 - (주)폭스에듀 에듀테크 활성화 업무제휴 양해각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(주)폭스에듀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효율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**(빅데이터 구축)** 예비 교원의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를 통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사례 발굴과 생성 및 개발
2. **(AI 디지털교과서 개발)**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기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
3. **(교육과정 기반 콘텐츠 개발)** 국가 교육과정 기반 현장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교 현장 적용에 관한 지원
4. **(미래 교육공간 설계)** 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미래 교육 공간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지원
5. **(에듀테크 연수)** 예비 교원 대상 최신 에듀테크 수업 활용 사례와 교수평기 일체화 등 전문 연수과정 제공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법적 구속력) 본 양해각서는 제5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7조(기타 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18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

FOX EDU
(주)폭스에듀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장신호



(주)폭스에듀

대표 이종탁



(주)폭스에듀 - 서울교육대학교 에듀테크 활성화 업무제휴 양해각서

(주)폭스에듀와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효율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**(빅데이터 구축)** 예비 교원의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를 통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사례 발굴과 생성 및 개발
2. **(AI 디지털교과서 개발)**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기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
3. **(교육과정 기반 콘텐츠 개발)** 국가 교육과정 기반 현장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교 현장 적용에 관한 지원
4. **(미래 교육공간 설계)** 교사의 에듀테크 도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미래 교육 공간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지원
5. **(에듀테크 연수)** 예비 교원 대상 최신 에듀테크 수업 활용 사례와 교수평기 일체화 등 전문 연수과정 제공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·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 2.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이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법적 구속력) 본 양해각서는 제5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제7조(기타 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18일



(주)폭스에듀
대표 이종탁

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상신호

